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7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6. 10. 14.
판 결 선 고	2016. 1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6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1,150,640원(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511,970원,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88,250원,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0,420원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와 B, C는 피상속인 망 D(이하 '피상속인'이라 한다)의 공동상속인으로서, 피상속인이 2003. 7. 15.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[redacted]구 E아파트 [redacted]동 [redacted]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. 8. 26. 접수 제83513호로 2003. 7. 15.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/7지분, B, C 앞으로 각 2/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.

나. 원고와 B, C는 2014. 2. 3.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. 2. 5. 접수 제6669호로 2014. 2. 3.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 한다).

다. 피고는 2014. 1. 1.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(이하 '이 사건 규정'이라 한다)에 따라, '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,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4/7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'는 이유로, 2016. 6. 13.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,660,090원(본세 2,559,870원, 신고불성실가산세 511,970원, 납부불성실가산세 588,250원), 지방교육세 269,830원(본세 219,410원, 납부불성실가산세 50,420원)을 부과 · 고지하였다(이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2014. 1. 1. 신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4. 2. 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데, 이를 알았더라면 2014. 1. 1. 전의 날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.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, 실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,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더욱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.

또한 피고가 과세기준일로부터 700여 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. 게다가 이 사건 규정은 경과 규정도 없이 시행되었으며, 유관기관에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에 대한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(이러한 공문을 보내었다면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을 알고 있었던 등기공무원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 신청을 한 원고에게 보정명령이나 각하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신설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날짜로 등기원인일자를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).

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1)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·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, 법령의 부지·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10780 판결,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0545 판결,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).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두66 판결,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등기로 인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나,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나 착오는 원고의 취득세 신고·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등기에 관여한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취득세의 신고·납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.

3) 원고는 피고가 700여 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,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,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 · 납부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[구 지방세법(2016. 1. 19.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, 제20조 참조],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· 납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,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신고 · 납부의무 해태를 뒤늦게 알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.

4)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등기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유관기관에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등기를 처리하여 주는 바람에 등기원인일자를 변경하여 취득세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,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고 다만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을 마련하여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가 구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또한 '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'에서 정한 바에 따른 법령의 공포 외에 피고나 입법기관이 다른 유관기관에게 법령의 개정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피고 등이 법원에 이 사건 규정의 신설사실을 알리지 않아 등기공무원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훈

판사 박용근

판사 황여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별지

관계법령

■ 구 지방세법(2016. 1. 19.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·등록·명의개서 등(이하 "등기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20조에 따른 신고·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
2.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
3. 「민법」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

제18조(징수방법)

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제20조(신고 및 납부)

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·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·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[등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19

부칙 <제12153호, 2014.1.1>

제7조(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)

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끝.